

-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-

공직자윤리법 개정 안내

04 |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

- ◎ **민간위원 참여 확대**
 - (현행) 9명(민간위원 5, 정부위원 4)
 - (개정) 11명(민간위원 7, 정부위원 4)
 - * 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행 유지
- ◎ **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근거 마련**
 - (취지) 취업심사대상 및 행위제한제도 도입에 따른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
 - (내용)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가능
 - * 임의규정이므로 시·도/시·도교육청/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체 상황에 맞춰 운영 가능
- ◎ **관련 기관 협조 의무화**
 - (취지)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 확인 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
 - (내용) 퇴직자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협조 의무 법률화



- ◎ **임의취업자 제재**
 - (취지)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확인없이 취업하는 사례 방지
 - (내용) 임의취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(1천만원 이하) 근거 신설
 - *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
- ◎ **심사결과의 공개**
 - (취지) 취업제한 또는 취업승인 사유 공개를 통해 취업심사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
 - (내용) 매년 국회·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 결과 추가

05 | 기타 재산등록제도 등 개선사항

- ◎ **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**
 - (현행)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
 - (개정)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
- ◎ **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**
 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열람·복사 허가대상에서 등록의무자 본인은 제외
 - * 현재 본인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PETI)을 통해 직접 열람·복사 가능
 -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
 - * (재산등록) 금융감독원 부원장보, 공기업 상임이사
 - (재산공개) 금융감독원 부원장보, 소방정감 이상 소방공무원

06 | 취업제한 관련 제재규정

제재 유형	현 행	신 설(추가)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•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·알선을 한 경우
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·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•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
시정 권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
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
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기업체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거부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•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


www.mopas.go.kr



I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개요

01 | 추진배경

〈'11. 5. 4 금감원 방문시 대통령님 말씀〉

“공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은퇴이후에 나쁜 관습에 합세하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까지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.”

◎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공직사회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우려 심각한 수준

- 전관예우 관행은 정부정책 결정이나 민간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, 정부가 강조하는 “공정사회 구현”에도 가장 큰 걸림돌

*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여론조사 결과('11.2월), ‘자녀에 대한 불법상속’, ‘탈세’ 등에 이어 「전관예우 관행」이 불공정한 주요 사례로 인식

◎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타파하고,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 개편 추진

02 | 추진경과

◎ ‘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’ 시 ‘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’ 보고('11.6.3)

◎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및 심의·의결

- (행안위) 법안 상정(6.14), 심사(6.20~21) 및 의결(6.23)
- (법사위) 법안 심사 및 의결(6.28)
- (본회의) 통과(6.29)

II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

01 | 이해충돌 방지의무 신설

◎ 공직자의 의무

-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및 개인이나 기관·단체에게 부정한 특혜 금지
- 재직 중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적 이용 및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

◎ 퇴직공직자의 의무

-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 발생 방지 노력

02 | 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

◎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

- (취지) 퇴직 전 전보를 통한 의도적인 경력세탁 방지
- (현행) 퇴직 전 3년 / (개정) 퇴직 전 5년

◎ 일정규모 이상 로펌·회계법인 등 취업심사대상에 포함

- (기준)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로펌·회계법인·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·세무법인
 - * 외형거래액 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
- (대상)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
 - *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 취업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
 - * 국무총리, 국무위원, 각부 차관,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 필요
- (심사)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업무에 대해 해당 로펌 등이 사건을 수입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제한
 - * 위반시 취업제한 위반의 죄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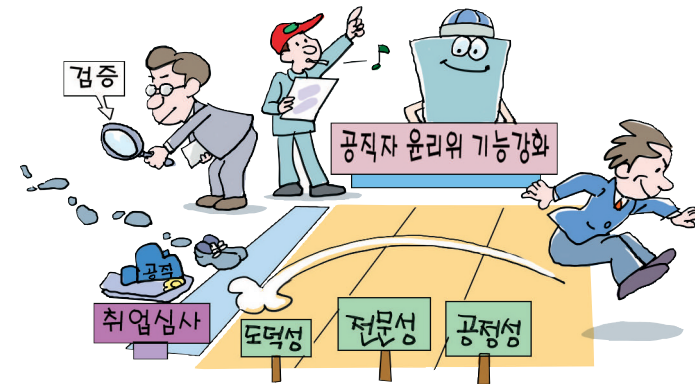
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

◎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법제화

- (취지) 사외이사 등 비상근 직위에 대한 취업심사 법적 근거 마련
 - * 현재,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취업심사를 하고 있음
- (내용) 사외이사·비상근고문도 취업심사대상으로 규정
 - *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모두 취업으로 간주

◎ 고의적인 불복소송기간을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

- (취지) 취업제한결정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취업제한기간(퇴직후 2년)을 도과하는 사례 방지
- (내용)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기간 진행 중단
 - * 다만, 위법한 결정인 경우 취업제한기간 진행



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

03 | 행위제한제도 도입

◎ 본인 취업 업무 영구 취업제한

- (취지) 퇴직 후 공·사익 충돌상황의 사전 방지
- (대상)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- (내용)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*한 일정업무**에 대해 퇴직 후 취업 금지
 - * 내부결재 등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
 - **법 제17조제2항의 업무(재정보조, 인·허가, 검사·감독, 조세부과, 계약·검사 등)
- (제재)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◎ “1+1” 업무제한(cooling off)

- (취지) 개정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과의 형평에 맞춰 일정 퇴직공직자에 대해 유사한 행위제한 도입
- (대상)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자
 - * 장·차관, 1급이상, 자치단체장, 공기업 기관장 등
- (내용) “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”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후 1년간 취업 금지
 - * 다만, 국가안보, 공익 목적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의 취업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 가능
- (제재)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

◎ 업무활동내역 보고 의무 신설

- (취지) ‘1+1 업무제한’의 실효성 확보 차원
- (대상) ‘1+1 업무제한’ 적용 대상자(재산공개자)
- (내용)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·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소속 사기업체업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
 - *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반 여부를 확인
- (제재)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

◎ 부정한 청탁·알선 금지

- (취지) 퇴직 이후에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
- (대상) 퇴직 전 소속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
- (내용)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·알선 금지
- (제재)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◎ 부정한 청탁·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신고의무

- (취지)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·알선 금지의 실효성 확보
- (내용) 재직자가 퇴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·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
 - *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경우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
 - * 신고자 보호 규정 병행 신설
- (제재) 위반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

◎ 취업관련 청탁·알선 금지

- (취지) 업무관련 사기업체등에 대한 기관 및 재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
- (재직자)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재직 중 본인의 취업 청탁 금지
- (기관) 해당 기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취업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 알선 금지
- (제재) 위반시 징계의결 요청(재직자) 및 시정권고(기관)